



홍콩 각료회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강문성 KIEP 무역투자정책실 WTO 팀장 (mkang@kiep.go.kr, Tel: 3460-1050)

주요 내용

- ▣ 지난 2005년 12월 13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마지막 날(18일) 밤 늦게 최빈개도국 지원,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시한 설정 등이 포함된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었음.
 - 홍콩 각료회의의 목표는 지난 11월 7일 '분야별 완벽한 세부원칙(full modality)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간단계' 로 재조정되었음.
 - 이러한 목표의 재조정을 고려할 때, 이번 홍콩 각료회의는 향후 협상의 진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세부이슈별로 회원국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해 2006년 4월 말까지 분야별 세부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회원국 모두의 추가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 이번 각료회의 기간 동안 개발(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 농업(수출보조금 철폐시한), 비농산물 시장접근(관세감축공식) 등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었는데, 개발분야에서는 미국의 입장, 농업 분야에서는 EU의 입장, 비농산물 시장접근에서는 개도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음.
 - 선진국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를 2008년까지 최소 97% 이상 품목에 대해 점진적인 방법으로 부여하기로 합의하였고, 개도국의 경우 유연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선진국은 농업분야의 수출보조금을 2013년까지 철폐하되 이행 기간 중 전반기 동안 상당한 부분(substantial part)의 감축이 이행되어야 함.

1. DDA 협상의 주요 의제 및 논의경과

가. DDA 협상의 의제 및 추진체계

- WTO/DDA 협상은 1947년 GATT 설립 이후 9번째, 1995년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임.
- DDA 협상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9개의 주요 협상의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2000년 초부터 협상이 시작된 농업 및 서비스 분야도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로 채택되었음.
 - 그 외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규범(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과 개발, 지식재산권(TRIPS),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 양해(DSU) 등도 협상의제로 채택되었음.
- 협상의제 중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이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며,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발 등도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음.

표 1. DDA 협상의 주요 의제

구 분	의 제	
시장개방 관련 의제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분쟁해결 양해
	신규 규범 제정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기 타	무역과 환경, 지식재산권	
비 고	무역과 개발	

주: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싱가포르 이슈 중 무역원활화는 협상을 개시하고 나머지 3개 분야는 DDA 협상의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되었음.

자료: 강문성(2004), 『DDA 협상분야별 쟁점 및 평가와 우리의 통상정책방향』.

나. 논의 경과

-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출범된 DDA 협상은 협상 진행과정을 홍콩 각료회의까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 지금까지의 DDA 협상 논의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쿰 각료회의)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협상내용	분야별 입장표명	세부원칙 기본골격	분야별 세부원칙

주: 상기 단계는 분야별로 다를 수 있음.

자료: 저자 작성.

- DDA 협상 출범 이후 2003년 9월 제5차 WTO 각료회의(멕시코 칸쿰)까지를 1단계로 볼 수 있는데, 분야별로 이슈를 발굴하는 작업과 개별 이슈에 대해 회원국이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었음.
 - 분야별로 차이는 있으나 2002년 말 또는 2003년 초까지 이슈 발굴 및 세부 이슈별 회원국 입장표명이 주된 분위기이었으며, 2003년 상반기 동안 칸쿰 각료회의를 앞두고 분야별 세부 원칙(modality)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었음.
 - 이 기간 동안의 성과로는 2003년 8월 채택된 TRIPS와 공중보건 관련 결정임(WT/L/540).
 - 이 결정에 따르면, 의약품 수출국은 TRIPS 협정의 강제실시권¹⁾을 통해 의약품 생산시설이 없거나 미비한 회원국이 필요한 물량만을 생산하여 전량 수출할 수 있음.
- 2003년 9월 멕시코 칸쿰에서 개최되었던 제5차 WTO 각료회의는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로 결렬되었음.
 - 이 회의에서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 개시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이에 반대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크게 대립되었고, 농업분야의 모든 이슈에 걸쳐 선진국과 수출개도국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였음.
- 2단계는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이 마련된 2004년 7월까지로 볼 수 있는데, 칸쿰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DDA 협상은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가 DDA 협상의 기본골격에 관한 합의문(WT/GC/W/535)을 채택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재개되었음.
 - 상기 합의문(WT/L/579) 3항에 따르면, 도하 각료선언문 45항에 나타난 2005년 1월 1일의 시한을 넘어 제6차 각료회의까지 DDA 협상을 지속하고 제6차 각료회의는 2005년 12월 홍

1)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ces)은 국가 위기상황 등에서 개별국가가 자국내에서 특허권 없이도 약품 등을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을 지칭함.

콩에서 개최기로 결정하였음.

- July Package 이후 홍콩 각료회의까지를 DDA 협상의 3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분야별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임.
- 2004년 8월 합의된 July Package가 협상의 기초가 되어 분야별 세부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하였으나, 핵심이슈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 July Package 이후 형성된 WTO 회원국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2005년 7월까지 홍콩 각료회의의 결과물의 1차 윤곽(first approximation: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분야의 세부원칙에 대한 1차 초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시한을 충족시키지 못함.
- 2005년 11월 들어서도 농업, NAMA, 서비스 등 핵심분야에서 주요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이 분야 대신 개발분야, 특히 최빈개도국(LDCs)에 대한 지원확대문제가 각료회의의 주요 목표로 대두되었음.

2. 홍콩 각료회의에서의 논의 동향 및 각료선언문 주요 내용

가. 홍콩 각료회의 논의동향

- 홍콩 각료회의 이전 각료선언문 1~3차 초안이 발표되었고, 각료회의 기간 동안 4차 초안(12월 17일)과 최종안(12월 18일)이 수정·발표되었음.
- 11월 26일 라미(Pascal Lamy) 사무총장은 각료선언문 1차 초안을 배포하였는데, 농업, NAMA 등 기존 주요 협상의제보다 개도국 관심이슈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금번 회의의 성과물을 개발 패키지로 하려는 의도가 동 초안에 포함되었음. 또한 농업, NAMA,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개발 등 6개 분야별 협상그룹 의장의 보고서를 첨부하였음.
- 12월 1일 라미 사무총장은 제2차 초안을 배포하였는데, 협상그룹 의장 보고내용 중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 합의(July Package) 이후 농업 및 NAMA 분야의 협상진전내용을 본문으로 처리하였고, 12월 2일 일반이사회(GC)에서 홍콩 각료회의에 제출할 각료선언문 초안을 채택하였음.

- 12월 7일 일반이사회는 수정된 제3차 초안을 다시 채택하였는데, 서비스 관련 분야의 추가적인 합의필요 사항, 통가(Tonga)의 WTO 가입, TRIPS와 공중보건 관련 사항 등이 추가되었음.
- 각료회의 기간 동안 의장자문그룹(Chairman's Consultative Group)회의,²⁾ 분야별 회의(전체, 그룹, 양자) 등을 통해 제기된 이슈를 협의하여 12월 17일 4차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회원국 간 의견 조정을 통해 18일 최종안이 발표되었음.

표 3. 각료선언문 발표 및 수정

선언문	발표일자	주요 내용
1차 초안	11월 26일	· 개발에 초점 · 농업, NAMA,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개발 등 6개 분야별 협상그룹 의장의 보고서 첨부
2차 초안	12월 1일	· July Package 이후 농업, NAMA 분야의 협상 진전내용을 본문으로 처리 · 12월 2일 일반이사회에서 채택
3차 초안	12월 7일	· 서비스 관련 분야의 bracket 추가 · 통가의 WTO 가입 · TRIPS와 공중보건 관련 사항
4차 초안	12월 17일	·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 시한(합의 필요) · 개발: 적용품목범위, 시한 등(합의 필요) · NAMA: 스위스공식 적용, 계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음.
최종안	12월 18일	· 2. '나' 절 참고

자료: 저자 작성.

- 홍콩 각료회의의 목표는 (1) 각료선언문(3차 초안)을 보다 개선하여 채택하고, (2) 최빈개도국(LDCs)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임.
- 3차 초안에서의 문안 중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 및 NAMA 협상 관련 세부원칙의 결정과 양허표 제출시한, 서비스협상과 관련하여 협상그룹 의장보고서(협상목표, 접근방식, 작업일정)를 향후 협상의 기초로 활용할지 여부, 환경상품에 대한 협상의 방식 및 일정 등이었음.
-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무관세(duty free)/무쿼터(quota free) 제공과 관련하여, 품목범위, 대상국가, 구속력(binding) 부여 여부 등이 핵심쟁점이었음.

2) 과거 '그린 룸(Green Room)' 회의를 의미하는데 30개국 내외의 주요 회원국이 모여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회의임. 제네바 소재 WTO의 사무총장 옆방에서 이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방의 카펫이 그린색이어서 '그린 룸 회의'로 명명되었음. 홍콩 각료회의부터 이 회의가 '의장자문그룹 회의'로 불리기 시작함.

표 4. 홍콩 각료회의의 일정 및 주요 협상내용

날짜	주요 회의	주요 협상내용
12월 13일(화)	· 개회식	· 각료회의 개회
12월 14일(수)	· 각료회의 본 회의(오전, 오후) · 개별 그룹별 회의(케언즈, G33, G10 등) · 농업 비공식 회의 · 고위급(HODs) 회의	· 기존 입장 되풀이 · 농업: EU, 수출보조금과 미국의 식량원조 문제를 연계 · NAMA: 미국 제안(스위스공식, 선진국 및 개도국 이중계수)에 대한 논란 지속
12월 15일(목)	· 각료회의 본 회의(오전, 오후) · 개별 그룹별 회의(G33, G10 등) · NAMA 비공식회의(소규모, 전체) · 고위급(HODs) 회의	· 큰 진전 없음. · 농업: G10, 민감품목 대우 관련 제안 · 서비스: G90, 각료선언문 문안 약화 주장 · 개발: 최빈개도국 지원에 대한 스위스 주장(품목범위 및 기간 설정 후 phase-in) 공감대 형성
12월 16일(금)	· 각료회의 본 회의(오전, 오후) · 개별 그룹별 회의(G33-G20, G10 등) · 서비스 core group 각료회의 · 개도국 비공식 그룹회의 · NAMA 비공식회의(전체) · 고위급(HODs) 회의	· 각료선언문에 대한 제안서 마감시한(17일 아침 6시)과 4차 수정안 발표계획(17일 중) 공지 · 의장자문그룹(그린 룸) 회의를 통해 주요국 협의 지속
12월 17일(토)	· 각료회의 본 회의(오전, 오후) · 개별 그룹별 회의(G33, G10 등) · 환경 Friends 회의 · 미국 주최 농업 수출신용 소규모 회의 · 고위급(HODs) 회의	· 각료선언문 4차 초안 발표 · 고위급 회의 및 의장자문그룹 회의를 통해 협상 지속(18일 오전 9시까지 진행)
12월 18일(일)	· 고위급(HODs) 회의 · 각료회의 폐회식	· 각료선언문 최종안 발표 및 채택 · 각료회의 폐회

자료: 저자 작성.

- 12월 13~18일의 홍콩 각료회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개발(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문제), 농업(수출보조금 철폐시한, 식량원조, 수출신용, 국영무역회사), 비농산물 시장접근(관세인하공식, 특혜침식) 등이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미국과 EU간 이견이 지속되었음.

- 홍콩 각료회의 초반에는 기존 입장만이 되풀이되며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는데, 최빈개도국 지원에 대한 미국의 반발,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시한(미국 제안: 2010년)에 대한 EU의 반발, 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G90의 반발 등 회원국간 이견이 표출되었음.

나. 각료선언문 주요 내용

- 12월 18일 채택된 각료선언문 최종안(WT/MIN(05)/W/3/Rev.2)은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시한, 최빈개도국 지원문제 등에서의 회원국간 이견을 조정하여 발표된 것임.
- 이러한 최종안은 개발분야에서는 미국의 입장, 수출보조금 철폐시한에서는 EU의 입장, NAMA에서는 개도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절충안임.
- 농업분야에서는 수출보조금 철폐시한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으나, EU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계획을 반영하여 수출보조금 철폐시한이 2013년으로 합의되었음.
- 국내보조의 경우 구간의 수는 3개(최상위: 1개 국가, 중위: 2개 국가, 하위: 나머지 국가)로 합의되었으며, 무역왜곡 국내보조 감축에 대한 규범(disciplines)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음.
- 수출경쟁분야에서는 선진국의 수출보조금 철폐시한을 2013년으로 설정하되, 이행기간 전반기(first half) 동안 상당 부분(substantial part)을 감축하도록 합의하였으며,³⁾ 식량원조, 국영무역회사, 수출신용 등에 대한 규범을 2006년 4월 말까지 마련하는 안이 합의되었음.
- 시장접근분야에서는 개도국의 유연성(flexibility) 보장을 위해 적절한 수(appropriate number)의 품목(세번 기준)을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음.
 - 또한 개도국은 수입물량 및 가격 연쇄반응(price trigger) 등에 기초하여 특별 긴급수입제한 조치(SSM)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음.
-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분야에서는 스위스공식의 적용을 합의하였으나, 계수(coefficients)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음.
- 그동안 미국이 주장하였던 선진국 및 개도국간 이중계수(dual coefficients)안은 브라질과 인도의 반발에 따라 관세감축의 기본적인 방향을 서술하는 데 그침.
 - 도하 위임사항(mandate)과 July Package에 나타난 관세감축 관련 기본방향이 또 다시 기술되었는데, 관세정점(tariff peaks), 고관세(high tariffs),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의 감축 및 철폐를 포함하여 관세를 감축 또는 철폐하기로 함.

3) EU는 4차 초안 중 수출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해 회원국간 협의(12월 18일)하였는바, 20개국 이 2013년 이 전 철폐를 동의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등 5개국은 반대하였음.

- 3차 및 4차 초안과 달리, 특혜침식(preference erosion), 소규모 경제(small, vulnerable economies), 부문별 접근방법(sectoral initiatives), 관세인하 개시를 위한 기준 관세율 설정 등에 대한 방향이 추가되었음.
- 또한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에 있어서의 균형이 강조되었는데, 두 분야의 시장접근에 있어 비교적 높은(comparably high)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의되었음.
 - o 12월 17일 3차 초안에는 두 분야 시장접근에 있어 ‘동등하게 높은(commensurately high)’ 수준이라고 기술되었으나, G10의 반발에 따라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합의되었음.
- 서비스분야에서는 각료선언문뿐만 아니라 해당 부속서 역시 수정되었음.
- 각료선언문 본문에서는 서비스협상의 목표, 개도국 유연성 원칙 등이 합의되었으며, 부속서 C에서는 모드별 협상목표, 이해당사국간 복수적 협상(plurilateral negotiations) 개시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고려 등을 합의하였음.
 - o 복수적 협상방식은 서비스시장개방의 양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양지방식(Request/Offer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복수의 국가가 상대국 특정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집단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임.
- 협상일정으로 2006년 2월까지 복수적 양허요청서, 2006년 7월까지 2차 수정양허안, 2006년 10월까지 최종양허안 등의 제출이 합의되었음.
- 개발분야는 부속서 F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는데, 최빈개도국⁴⁾에 대한 무관세/무쿼터를 2008년까지 모든 상품에 대해 점진적인 방법으로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논란이 되었던 법적 구속(binding)은 채택되지 않았음.
- 그러나 상기 혜택 부여에 대해 어려움을 가진 회원국은 전체 상품의 97%에 대해 이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개도국의 경우 자발성에 근거하여 유연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으며,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중소기업(SMEs)이 다자무역체제로부터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WTO 산하 국제무역센터(ITC)와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음.

4) UN 기준에 따르면, 총 50개국의 최빈개도국이 있으나 이 중 WTO 회원인 국가는 32개국임.

3. 홍콩 각료회의에 대한 평가

- 제6차 각료회의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향후 협상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 분야별 ‘완벽한 세부원칙(full modality)’으로 도달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 여부는 ‘분야별 세부원칙 도출’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만큼 회원국간 이견을 줄일 수 있느냐에 초점이 모아졌음.
 - 이번 홍콩 각료회의가 2년 전 칸쿤 각료회의에 이어 또 다시 결렬될 경우,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비판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회원국간 공유되었고, 이러한 공감대를 통해 개별 분야별로 절충안을 마련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음.
-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점은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의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며, 절충안에서도 개도국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평가됨.
 - 과거에는 무역규모에 따라 주요 4개국(Quad)으로 미국, EU, 일본, 캐나다(농업이 이슈인 경우 호주) 등이 참여하였으나, 그동안 DDA협상과정에서는 일본, 캐나다 대신 브라질과 인도가 참여하였음.
 - 이번 각료회의의 결과 역시 브라질 등 농업이 강한 개도국이 가장 높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평가됨.
 - 선진국의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로 인한 혜택은 대규모 농업부문에 경쟁력을 가진 국가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비농산물 시장접근에서도 개도국의 이해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농업이 강한 개도국이 양 분야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임.
 - DDA협상이 성공적 타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개도국에 대한 이해 반영이 중요한데,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 역시 전체적인 협상타결과 홍콩 각료회의의 성과 홍보 측면에서 진행된 것으로 평가됨.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2006년 4월까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 핵심의제에 대한 세부원칙을 마련하기로 합의되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WTO 회원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향후 농업부문에서는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대우와 저율관세수입물량(TRQ), 관세감축 구간 및 폭, 비농산물 시장접근에서는 관세감축공식의 계수문제, 부문별 접근방법의 구체적인 원칙, 규범에서는 반덤핑, 수산보조금 등이 핵심의제로 부상될 전망이다.
 - 우리 입장에서는 농업부문에서의 민감품목 대우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느냐가 중요한데, 3차 초안에서 제기된 것처럼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의 편차(deviation)가 클수록 관세할당(tariff quotas)의 증가가 커야 한다'고 합의될 경우 우리 농업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평가됨.
 - 반덤핑분야의 경우 관련 협정의 개정에 미국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협정문안 중심으로의 협상 개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미 의회 역시 현재의 반덤핑협정을 개정하는 것은 미국 무역구제조치법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DDA협상결과 전체를 비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⁵⁾
- 상기 핵심의제는 회원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으나, 지금까지 협상의 이면에서 상기 이슈에 대한 많은 논의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어 협상이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
- 2006년 상반기 중으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다면,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2006년 말 또는 2007년 상반기까지 DDA 협상 전체가 타결될 수 있고, 회원국별 이행검증과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2008년 중으로 DDA 협상결과가 발효될 것임.
-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수준이 낮을 경우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평가되며 WTO 중심의 다자주의에 대한 비판(비효율성을 중심으로)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세부협상의제별로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DDA협상 전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음.
- DDA협상이 2006년말을 넘어 계속될 경우 미국은 2007년 6월말 만료되는 무역증진권한

5) Washington Trade Daily, November 9, 2005.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⁶⁾을 '제한적인 목적(limited purpose)'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연장하려고 노력할 전망이다.⁷⁾

-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은 무역증진권한의 만료시점을 고려하여 DDA협상을 2006년말까지 종료하고 2007년 상반기에 미 의회 비준을 받는다는 것이었음.
- DDA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회원국들은 다자무역협상의 한계를 재인식하고 FTA 등 지역주의에 좀 더 정책초점을 모을 것으로 전망돼, 우리 역시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우리로서는 다자무역협상의 성공이 중요한바, 우리의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피해예상 부문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협상전략을 마련하되 향후 개방일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민간 부문의 대응이 필요함.
- 농업협상의 경우,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사안들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농업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라는 실익의 관점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우리와 이해가 유사한 회원국들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각국별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공조 수준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성도 검토되어야 함.
- 또한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DDA 협상결과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도국의 높은 관세율이 인하되면 대외경쟁력을 갖춘 업종에게는 수출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 DDA 협상결과 무역규범의 개선 및 명확화가 확보되면, 이에 맞춰 국내 규범 및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도록 재편하고 이를 통해 세계화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6) 무역증진권한은 과거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회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문성·나수엽(2002)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참고.

7) Inside US Trade, November 4, 2005.